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932호)

예비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9. 3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10. 4

다. 상 정 일 자 : 2005. 10. 11

총무위원회 상정

다. 의 결 일 자 : 2005. 10. 12

총무위원회 원안가결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5.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
합 계	233,703,423	223,040,224	10,663,199	4.8
일 반 회 계	223,164,417	212,503,155	10,661,262	5.0
특 별 회 계	10,539,006	10,537,069	1,937	0.0
상 수 도 사 업	4,044,667	4,044,667	0	0.0
하 수 도 사 업	531,726	531,726	0	0.0
주 택 사 업	25,845	25,845	0	0.0
의 료 보 호 기 금 운 영	399,752	397,815	1,937	0.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1,460,735	1,460,735	0	0.0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2,129,134	2,129,134	0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59,181	1,459,181	0	0.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209,873	209,873	0	0.0
주 차 장 특 별 회 계	278,093	278,093	0	0.0

3.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5.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23,164,417	100.0	212,503,155	100.0	10,661,262	
세	지 방 세	12,239,000	5.0	11,749,000	5.5	490,000
	세 외 수 입	31,568,986	14.1	30,670,508	14.4	898,478
	경상적세외수입	7,496,562	(3.4)	6,559,875	(3.1)	936,687
	임시적세외수입	24,072,424	(10.7)	24,110,633	(11.3)	△38,209
입	지 방 교 부 세	89,411,707	40.1	89,411,707	42.1	0
	재 정 보 전 금	2,722,240	1.2	2,272,200	1.1	450,040
	보 조 금	87,222,484	39.1	78,399,740	36.9	8,822,744
	국고보조금등	64,018,369	(28.7)	56,752,445	(26.7)	7,265,924
	도비보조금	23,204,115	(10.4)	21,647,295	(10.2)	1,556,820
	지 방 채	0	0.0	0	0.0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5.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23,164,417	100.0	212,503,155	100.0	10,661,262	
세	경 상 예 산	47,579,381	21.3	47,381,138	22.3	198,243
	인 건 비	31,261,420	(14.0)	31,168,462	(14.7)	92,958
	경상적경비	16,317,961	(7.3)	16,212,676	(7.6)	105,285
	사 업 예 산	169,303,182	75.9	156,891,753	73.8	12,411,429
	보 조 사 업	125,548,633	(56.3)	114,620,201	(53.9)	10,928,432
	자 체 사 업	43,754,549	(19.6)	42,271,552	(19.9)	1,482,997
출	채 무 상 환	1,551,000	0.7	1,551,000	0.7	0
	지방채상환	1,551,000	(0.7)	1,551,000	(0.7)	0
	예 비 비 등	4,730,854	2.1	6,679,264	3.1	△1,948,410
	예 비 비	2,080,316	(0.9)	4,028,626	(1.9)	△1,948,310
	기 타	2,650,538	(1.2)	2,650,638	(1.2)	△100

4.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5.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10,539,006	100.0	10,537,069	100.0	1,937	
세 입	지 방 세	0	0.0	0	0.0	0
	세 외 수 입	10,485,693	99.5	10,485,693	99.5	0
	경상적세외수입	2,620,762	(24.9)	2,620,762	(24.9)	0
	임시적세외수입	7,864,931	(74.6)	7,864,931	(74.6)	0
	지 방 교 부 세	0	0.0	0	0.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0	0.0	0	0.0	0
	보 조 금	53,313	0.5	51,376	0.5	1,937
	국고보조금	38,651	(0.4)	37,005	(0.4)	1,646
	도비보조금	14,662	(0.1)	14,371	(0.1)	291
	지 방 채	0	0.0	0	0.0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5.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10,539,006	100.0	10,537,069	100.0	1,937	
세 출	경 상 예 산	316,938	3.0	316,881	3.0	57
	인 건 비	179,073	(1.7)	179,016	(1.7)	57
	경상적경비	137,865	(1.3)	137,865	(1.3)	0
	사 업 예 산	9,439,203	89.6	9,437,323	89.6	1,880
	보조사업	2,075,789	(19.7)	2,073,909	(19.7)	1,880
	자체사업	7,363,414	(69.9)	7,363,414	(69.9)	0
	채 무 상 환	128,408	1.2	128,408	1.2	0
	지방채상환	128,408	(1.2)	128,408	(1.2)	0
	예 비 비 등	654,457	6.2	654,457	2.9	0
	예 비 비	552,117	(5.1)	552,117	(5.2)	0
기 타	102,340	(1.1)	102,340	(1.0)	0	

5. 채무부담 행위조서 : 해당없음

6. 명시이월 사업조서 : 해당없음

7. 계속비 사업조서 : 해당없음

8. 2005. 제2회 추가경정 보조(국고, 군특, 기금, 도비, 분권)사업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고보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	도비보조	분권교부세	
경정예산액	계	128,297,513	68,107,246	29,762,455	114,626	24,989,406	5,323,780
	국비 (군특, 기금)	66,622,323	45,690,386	18,217,840	110,143	0	2,603,954
	도비	23,204,115	9,335,404	2,715,579	0	10,355,358	797,774
	군비	38,471,075	13,081,456	8,829,036	4,483	14,634,048	1,922,052
기정예산액	계	117,380,404	57,950,438	29,262,455	119,160	24,800,214	5,248,137
	국비 (군특, 기금)	59,284,560	38,422,195	18,217,840	112,410	0	2,532,115
	도비	21,647,295	7,955,476	2,715,579	0	10,178,466	797,774
	군비	36,448,549	11,573,767	8,329,036	6,750	14,621,748	1,918,248
증감	계	10,917,109	10,156,808	500,000	△4,534	189,192	75,643
	국비 (군특, 기금)	7,337,763	7,268,191	0	△2,267	0	71,839
	도비	1,556,820	1,379,928	0	0	176,892	0
	군비	2,022,526	1,508,689	500,000	△2,267	12,300	3,804

9.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세 입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2005.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2005.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2005.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합 계	171,968,260	170,057,345	1,910,915	168,622,747	166,713,769	1,908,978	3,345,513	3,343,576	1,937
기 획 감 사 실	93,636,025	93,185,985	450,040	92,176,844	91,726,804	450,040	1,459,181	1,459,181	0
행 정 과	154,673	154,673	0	154,673	154,673	0	0	0	0
중 합 민 원 실	249,923	233,345	16,578	224,078	207,500	16,578	25,845	25,845	0
문 화 관 광 과	19,236,427	19,211,235	25,192	19,236,427	19,211,235	25,192	0	0	0
재 무 과	39,671,424	38,181,424	1,490,000	39,671,424	38,181,424	1,490,000	0	0	0
사 회 복 지 과	15,573,700	15,571,763	1,937	13,713,213	13,713,213	0	1,860,487	1,858,550	1,937
보 건 소	2,123,160	2,218,170	△5,010	2,123,160	2,128,170	△5,010	0	0	0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1,322,928	1,390,750	△67,822	1,322,928	1,390,750	△67,822	0	0	0

○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2005.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2005.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2005.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합 계	119,767,214	120,791,541	△1,024,327	116,421,701	117,447,965	△1,026,264	3,345,513	3,343,576	1,937
기 획 감 사 실	26,165,688	28,078,206	△1,912,518	24,706,507	26,619,025	△1,912,518	1,459,181	1,459,181	0
행 정 과	8,004,648	7,953,006	51,642	8,004,648	7,953,006	51,642	0	0	0
중 합 민 원 실	1,215,115	1,197,715	17,400	1,189,270	1,171,870	17,400	25,845	25,845	0
문 화 관 광 과	37,590,796	37,461,538	129,258	37,590,796	37,461,538	129,258	0	0	0
재 무 과	4,116,631	3,696,731	419,900	4,116,631	3,696,731	419,900	0	0	0
사 회 복 지 과	25,850,601	25,708,642	141,959	23,990,114	23,850,092	140,022	1,860,487	1,858,550	1,937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4,799,450	4,797,450	2,000	4,799,450	4,797,450	2,000	0	0	0
보 건 소	6,058,338	5,942,616	115,722	6,058,338	5,942,616	115,722	0	0	0
관광지관리사업소	1,387,897	1,377,587	10,310	1,387,897	1,377,587	10,310	0	0	0
읍 면 예 산	4,578,050	4,578,050	0	4,578,050	4,578,050	0	0	0	0

10.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의안번호 제932호로 접수되어 2005년 10월 4일자로 제1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결정 되었거나 추가 또는 감액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8. 8 ~ 8. 9 호우피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된 추가 재원으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37억 34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230억 4,022만 4천원의 4.8%인 106억 6,31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231억 6,44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125억 315만 5천원의 5.0%인 106억 6,126만 2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3억 9,781만 5천원의 0.5%인 193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9,975만 2천원이며, 그 외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과목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및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 등 보조사업 편성현황은 총 1,282억 9,75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 8,040만 4천원 보다 109억 1,71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 101억 5,680만 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억원, 도비보조 1억 8,919만 2천원, 분권교부세 7,564만 3천원 등 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9억 897만 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93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700억 5,734만 5천원보다 19억 1,091만 5천원이 증액된 1,719억 6,826만원이고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2,626만 4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93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207억 9,154만 1천원보다 10억 2,432만 7천원이 감액된 1,197억 6,721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결정 되었거나 추가 또는 감액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8. 8 ~ 8. 9일 호우피해 복구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된 추가 재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공통엑스포 관련사업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예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도비 보조금 전액이 삭감된 사업과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나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질의 및 답변

<기획감사실 소관>

- 문 :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 증액 사유는 ?
- 답 : 일용직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 문 : 군정홍보 전광판 교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
- 답 : 2005년도중에 군정 홍보전광판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 정 과 소관>

- 문 :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예산은 국비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답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건의하였으나, 내년 지방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 없음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

- 문 :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향후 강사채용 등 골프연습장 운영 방향은 ?
- 답 :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기존의 스쿼시장, 헬스장을 개선하고자 인근 진주, 마산 실내골프연습장을 벤치마킹하여 군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골프연습장 운영은 강사 1명을 채용하여 약 40명의 회원 모집으로 강사 인건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 : 진주, 마산 실내골프연습장은 공설 또는 사설중 어디에 해당되고, 골프연습장 설치 문제는 군민간의 위화감 조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 답 : 진주, 마산 실내골프연습장은 사설입니다.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군민정서상 이른감이 있으나, 골프 교습지망생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골프인구의 대중화 추세에 맞추어 수익적 측면에서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 무 과 소관〉 :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 :

- 문 : 고성읍 교동마을 경로당 신축 및 정동마을 경로당 보수 등 도비지원 예산은 사전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였는지 ?
- 답 : 예 했습니다.
- 문 : 상리 고봉새마을 창고 수해피해복구 사유는 ?
- 답 : 8. 8 ~ 8. 9 호우시 침수되어 다른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 문 : 경로당 보수는 군비로 할 수 없는지 ?
- 답 : 금회 추경에는 예산 부족으로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 문 : 방문 보건차량 구입예산 증액 사유는 ?
- 답 : 방문 보건차량 구입예산 부족분입니다.
- 문 : 군민체조 보급 목적이 읍·면 경연대회 목적인지, 보급확산 방법은 ?
- 답 : 군민체조 보급은 경연대회 목적은 아니고, 읍면 마을단위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실시하고 점차 면 전체로 확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 문 : 당항포 주차료 삭감액이 당초 예산금액에 비하여 큰 규모로 감액된 사유는 ?
- 답 : 금회 추경예산 계상 착오입니다.
- 문 : 수석 판매수입이 크게 감액된 사유는 ?
- 답 : 수석 판매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문 : 풍선 판매수입 감액사유는 ?
- 답 : 풍선 판매수입은 현재 판매중지 하였습니다.
- 문 : 벨트 및 스텐차단봉 구입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 답 : 예 잘 알겠습니다.

12. 토 론 : 없음

13. 심사결과 :

- 2005. 10.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